

1.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기준 폐지 (안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한 주택도 허용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특별공급 대상 확대로 원활한 주택 공급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‘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’(1.3.)

2.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 (안 제3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반영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당초 20%에서 19%로, 민간택지는 당초 10%에서 9%로 각각 조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확보로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‘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’(’22.10.26)

3. 소득산정 방법 정비 (안 제8조, 제9조, 별표1, 별표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공급의 소득산정 방식 정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득증빙서류 명칭 변경사항 반영, 타법 개정에 따라 프리랜서 및 일용근로 소득자 등 소득증빙방식 제시 등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